

# 딥노이드

## 정관

---

### 제1장 총 칙

####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딥노이드"라 한다. 영문으로는 DEEPNOID Inc.(약호 DEEPNOI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업
2. 정보통신 관련 제품 유통업
3. 정보통신 컨설팅업
4. 정보통신 서비스업
5.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6. 전원공급장치 제조업
7. 전자, 통신기기 제조업
8. 자동제어반, 계장(계측)제어장치 제조업
9. 반도체제조장치 제조업
10. 정보통신공사업
11. 전기공사업(경미한공사)
12. 건설업
13. 데이터 기반 분석, 분류서비스업
14. 클라우드 서비스업
15. 소프트웨어 판매, 유통, 유지보수업
16.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업
17. 의료기기 제조, 판매유통, 유지보수서비스업
18. 광고대행업, 광고매체판매업
19. 전자상거래 및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
20. 전자금융업
21. 출판업 및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2. 교육 및 컨설팅업
23. 인터넷 광고 및 기타 광고
24. 서적 출판, 인쇄 및 판매업

25. 교육서비스업
26.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관련사업 일체
27. 의료기기 판매 및 수출입업
28. 의료기기,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에 관련된 투자 및 공동사업운영
29. 병원 경영지원사업(MSO)
30. 병원시스템 통합구축서비스의 개발, 제작 및 판매업
31. 의료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작 및 판매업
32. 외국인 환자유치업
33. 의료용 진단사업
34. 의료기기 및 기계장치 임대업
35. 의료 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작 및 판매업
36.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7. 원격의료관련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업
38. 원격의료관련 시스템 연구개발에 따른 국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획득 및 이전
39. 의료법에 규정된 부대사업 운영업
40. 각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41. 각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42. 각호와 관련된 제반사업 및 국내·외 투자
43.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공장,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eepnoi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1주의 금액 500원 기준)로 한다.

##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8조(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제9조(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9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제9조의3(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③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게 되며, 전환조건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⑦ 회사에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류주식의 주주는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⑧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배정한다.
- ⑨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⑩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⑪ 제9항에 따라 종류주식의 주주로부터 상환을 청구 받은 경우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환청구

를 받은 사실과 상환 가능한 주식의 수량 및 금액을 상환청구를 한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하여 종류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상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또는 위와 같이 상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상환기간"이라 한다)동안 회사의 본점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유 중인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종류주식 주주의 상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상환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이내에 제12항에 따른 상환금액과 미지급된 배당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으나 청산 시까지 배당되지 아니한 이익)을 상환 청구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⑫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상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되, 본 건 종류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⑬ 회사는 법률에 따라 종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 상환 청구된 금액을 모두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원으로 상환에 응하되 종류주식의 주주 사이에서 상환 청구한 주식의 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상환하기로 한다. 그 이후 회사에 종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마련된 경우, 회사는 동 재원을 즉시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종류주식 주주 사이에서는 상환 청구한 주식의 수에 동등한 비율로 상환하기로 한다. 상환 청구를 하였으나 상환이 되지 아니한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상환기간은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 법령과 본 정관에 따라 상환주식에 부여된 모든 권한과 우선권이 부여된다.

⑭ 종류주식의 주주는 최초 발행일 익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 언제든지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다.

⑮ 제14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하되,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주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전환가격도 같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결성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⑯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⑰ 기타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㉓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㉔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㉑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㉒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㉓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2.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한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단,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㉕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㉖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㉗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의2(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 채

### 제17조(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써 위 전환청구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써 위 전환청구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50 비율을 한도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제21조의2(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준용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제21조의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 **제4장 주주총회**

#### **제22조(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23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소집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5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6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2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의결권의 대리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제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필요시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둘 수 있다.

### 제35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7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3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44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45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장 감 사

### 제46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7조(감사의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㉞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㉟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50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제7장 회 계

### 제52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와 제447조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법 제447조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5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56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57조(분기배당)

-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합계액
  6. 당해 사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7.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제58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22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1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8조 단서조항, 제9조의2, 제14조 제3항 단서조항, 제14조의2, 제15조 제4항, 제21조의2 단서조항, 제21조의3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7월 2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